
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8조의2제1항중 “훼손 및 변색된 경 우”를 “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”로 하고, 동 조 제2항중 “의결을”을 “심의를”로 한다.</p> <p>안 제19조제2항중 “경우의”를 “경우”로 한 다.</p> <p>현행 제2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동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</p> <p>안 제23조제1항중 “위원으로 구성하되”를 “위원을 위촉하여”로, “구성하여”를 “구성, 운 번제로”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마다 위원중에서 선출하며”로 한다.</p>	<p>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</p> <p>제23조제1항중 “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위원장, 부위 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하여 그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윤번제로 운영한다.”로 하고, 제2항중 “위 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”를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”로 하며, “2인”을 “5인”으 로 한다.</p> <p>제37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품의 사후관리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p> <p>②(미술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 례 시행 전에 미술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 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날부터 기산한다.</p>
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2항, 제32조 및 제35조제2항중 “문화 관광국장”을 “문화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17조제2항 및 제3항, 제18조, 제6장 제명 및 제21조중 “서울시미술위원회”를 “서울특 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”로 한다.</p> <p>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8조의2(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) ①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 치변경·파손·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 원상 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원상복구나 철거를 위하여는 서 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</p> <p>제19조제1항중 “건축주와 작가”를 “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”으로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</p> <p>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 할 경우 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기관</p>	<p>○委員長 劉大運 잠시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 (15時 54分 會議中止) (16時 18分 繼續開議)</p> <p>○委員長 劉大運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2. 1997年度文化局所管및教育文化費第1回서울 特別市一般會計歲入·歲出追加更正豫算案</p> <p>○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文 化局所管 및 教育文化費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오늘 안건심사의 진행순서는 文化局長의 제 안설명, 專門委員의 검토보고, 위원 질의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, 계수조정, 안건 의 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</p> <p>李相鎭 文化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</p>